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최재혁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날 짜 2023.02.23. (총 4 쪽)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1.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감찰기능과 관련한 근거규정에 대한 정보비공개를 결정한 대통령비서실에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31(화)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대통령실(구 청와대)의 감찰조직은 민주적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비리철폐에 대한 조사 등의 외관을 취하면서 개별 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정한 개인의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정부 시기부터 관련한 [근거규정의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통령실은 국정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한 법률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현재 대통령실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 감찰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근거규정 등이다(붙임자료1 참고).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첫째,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대통령비서실의 내부규정 등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이거나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 그리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또는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붙임자료2 참고).

3.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이 활용 중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미래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간주하여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감찰기능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거나, ‘공직자 감찰 조사팀 운영규정’ 자체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기강의 확립과 관련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로 볼 여지도 없다.
4. 특히, 참여연대는 2021년 정보공개청구와 그 비공개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내 감찰조직인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하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공개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제고해서 얻는 이득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으로서, 현재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공직자감찰조사팀’은 문재인정부의 공직감찰팀과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 이미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근거를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
5.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의 경우, 개별 정부기관의 운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그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감찰조사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스스로 폐지했던 ‘공직감찰반’ 조직을 되살린 결과이다. 대통령실은 왜 폐지했던 조직을 다시 설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률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끝.

▣ 붙임1: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관련(결정통지서 중)

▣ 붙임2: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사유(결정통지서 중)

대통령비서실

수신자 참여연대 귀하 (우 030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유)

제 목 정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10330682	접수일 2023. 01. 31.
----------------------	--------------------------

청구 내용	<p>참여연대는 2021년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부터 공개 받은 바 있음.</p> <p>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취임초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며 공직감찰반을 폐지했다가,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자 감찰 조사팀을 다시 설치했다고 알려졌음.</p> <p>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법, 시행령, 행정규칙, 훈령, 고시, 규정 등 모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포함) 2.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 또는 유지, 변경, 개정 되었는지 여부 3.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4. 2021년 공개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 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 붙임2: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사유(결정통지서 중)

<p>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p>	<p>법령상 비밀·비공개</p>
<p>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p>	<p>비공개 근거 조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p> <p>안녕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입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아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내용 : 대통령실의 감찰 근거 규정 및 법령 등 ○ 비공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엄정한 법집행과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비서실 내부규정 등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가지정 예정 및 지정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다른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특성상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의거, 비공
	<p>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